KOSHA GUIDE

C - 109 - 2017

- (1) 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화재감시인을 지정·배치 하여야 한다.
- (2)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내부 또는 인접하여 화기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위험 물질의 방출 및 처리를 위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내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및 잔류 분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- (3)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격리를 위하여 밸브를 차단한 후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부위는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공구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 비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4) 화기작업을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 밸브 잠금표시 및 맹판설치 표시를 부착하여 관계자 외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화기작업에 의한 화재·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장치 내 모든 작동부분에 대한 에너지원(전기, 가스 등)을 차단 후 차단 스위치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잠금장치(Lock-Out)와 꼬리표(Tag-Out)를 부착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금장치와 꼬리표는 함께 위치하도록 한다.
 - (나) 잠금장치와 꼬리표 설치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며,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하여야 한다.
 - (다) 잠금장치와 꼬리표 관련 절차는 정확하고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한다.
 - (라) 잠금장치와 꼬리표 설치 및 철거하는 순서를 확정하고 담당자를 선임 하여 확인 절차 없이 재가동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화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중 가연성가스 및 잔류 분진 여부를 확인 하고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 인근지역의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화염에 대한 비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8) 용접·용단으로 인해 불꽃, 스파크, 슬래그가 튀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·불받이포 등 차폐시설을 설치하고, 용접·용단 장소 인근의 개구부는 폐쇄 조치를 하여야 한다.